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4가합562091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1. 회생법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

2. 세원건설 주식회사

可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 론 종결 2016. 5. 23.

판결 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에 132,300,000원,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에 56,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생법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과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를 모두 가리켜 '원고 티이씨건설'이라 한다)와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원건설'이라 하고, 모두 가리켜 '원고들'이라 한다)는 영남대학교 의료원장으로부터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2012. 12.12. 주식회사 아이엠이엔씨(이하 '아이엠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수장(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티이씨건설 70%, 원고 세원건설 30%이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2. 12. 1. ~ 준공 2013. 8. 13.

5. 공사금액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공정율에 따라 월 1회, 30일 내 B2B or 전자어음만기 3개월 지급(2개월 할인료 지급)

(3) 지급방법 : 어음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189,200,000원

나. 아이엠이엔씨는 2012. 12. 6.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9,2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고 발행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2.경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고들과 아이엠이엔씨는 2013. 2.분

기성고를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공사대금을 기재하는 경우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2013. 3.분 기성고를 108,900,000원으로 각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아이엠이엔씨에 2013. 2.분 기성고를 3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2. 7. 및 2013. 2. 19. 아이엠이엔씨에 '현장대리인 투입, 자재승인서류 등의 조속한 처리와 칸막이, 지하 2층 발전기실 등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이엠이엔씨는 2013. 2. 21. '2013. 2. 22. ~2013. 2. 25.에 자재발주 및 작업자 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4. 2. 아이엠이엔씨에 총 공조실 판넬작업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타 공정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아이엠이엔씨는 2013. 4. 4. '2월 기성 할인한도 문제로 자금흐름이 막혀 자재비의 잔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다음주 안에 공정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자재 등이 투입되지 아니하였고 2013. 4. 12. 기능공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3. 4. 15.과 2013. 4. 16. 아이엠이엔씨에 작업 개시를 촉구하면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자 2013. 4. 22. 공정 진행 촉구 지시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3. 5. 7. 피고에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을 구하였다.

아. 2014. 5. 27. 원고 티씨건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9, 12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이엠이엔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 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이 아이엠이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보증한도인 189,000,000원을 초과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한도는

189,200,000원인데, 원고는 189,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인 189,000,000원 중 원고 티이씨건설에 132,300,000원(위 189,000,000원 × 70%), 원고 세원건설에 56,700,000원(위 189,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이엠이엔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아이엠이엔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정 지연 및 원고들이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 발행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부당하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엠이엔씨가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선행 공정 지연을 고지하였고, 아이엠이엔씨는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어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3. 2.경에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때 특별히 발주처의 선행 공정 지연 문제를 언급한 사실도 없어 선행 공정 지연이 이 사건 공사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하여 '공정률에 따라 월 1회, 30일내 B2B 또는 전자어음만기 3개월 지급(2개월 할인료 지급)'이라고 기재(제6조)되어 있어 어음의 바로 할인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아이엠이엔씨가 원고들에 공사대금지급보증증권 발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이나 공사대금지급보증증권 발행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가.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보증인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등).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 제6항은 '아이엠이엔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들은 제3조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이엠이엔씨가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물취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도급계약 상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서 약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엠이엔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아이엠이엔씨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살피건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가 작성한 감정서,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우씨엔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49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134,2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상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부분(이하 '이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은 1,757,800,000원(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892,000,000원 - 위 134,200,000원)이다.
- ② 원고들은 2013. 6. 10. 주식회사 대हे건축(이하 '대हे건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사건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52,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후속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후속 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증액된공사대금은 495,000,000원(위 2,252,800,000원 - 위 1,757,800,000원)이다(다만, 이후원고들과 대हे건축은 2014. 1. 6. 공사대금을 2,443,1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4.1. 15.로 이 사건 후속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도급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여 체결된 점, 위 변경계약은 이 사건후속 도급계약 상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시점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사건 도급계약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후속 도급계약 상 물량이 추가되거나 공종이 변경된 점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5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아이엠이엔씨가 실제로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감정인 B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일인 2013. 4.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감정을 실시한 결과 3,149,594,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후속 도급계약 상 공사대금은 그 범위 내에 있는 2,252,800,000원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계약금액 증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아이엠이엔씨는 원고들에 대하여 134,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피고는 아이엠이엔씨의 보증인으로서 2013. 5. 8. 원고들에게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채권은 위 134,2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800,000원(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상 보증한도액189,000,000원 - 위 134,200,000원)을 초과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의 상계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31,508,965원을 상계에서 제외하더라도 86,308,965원을 초과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보증계약자인 아이엠이엔씨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자동채권인 아이엠이엔씨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134,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4. 30.경 아이엠이엔씨에 2013. 2.분 기성고 대금 25,300,000원을 지급(2013. 3. 29.경 지급된 어음이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엠이엔씨의 채권자인 보군산업 주식회사는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3. 5. 8. 이전인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7961호로 아이 엠이엔씨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1,508,9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자동채권이 압류되어 채권자가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채권이 되는 아이엠이엔씨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77,391,035원(위 134,200,000원 - 위 25,300,000원 - 위 31,508,965원)이 남게 되었다.

라. 수동채권의 범위

1) 원고들이 아이엠이엔씨에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49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계의 수동채권이 원고들의 아이엠이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 자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상계는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방이 자기의 채권을 처분함으로써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하게 하여 쌍방의 편의, 공평의 유지, 채권 변제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인 바, 예외적으로 민법 제434조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직접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따른 상계에 있어서도 자동채권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어진채권일 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이 수동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별도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8. 아이엠이 엔씨의 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4조에 따라 아이엠이엔씨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2013. 5. 9.경 원고들에 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다음날로 서 상계적상일인 2013. 4. 23.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아이엠이엔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417,608,965원(= 위 495,000,000원 - 위 77,391,035원)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 417,608,965원은 피고의 보증한도인 189,000,000원을 초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상 보증금액 189,0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보증금액 189,2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이다)을 원고들의 출자비율에 따라원고 티이씨건설에 132,300,000원(= 위 189,000,000원 × 70%), 원고 세원건설 주식회사에 56,700,000원(= 위 189,000,000원 × 3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계약보증금 지급요청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진영현, 판사 여인지